

동물약품의 용법 · 용량과 휴약기간은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 형 철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부장

1.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은 축산농가의 기본적인 의무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이 보장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삶의 질과 안전이 우선 시 되는 선진국형 복지의 형태로 우리들의 실생활도 변화되고 있다.

먹거리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생명유지를 위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를 불리는 1차적인 욕구해결을 위한 것에서 기호식품을 선호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선택적으로 향유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국민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축산인 모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국내 축산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받은 절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로채는 부도덕한 관리들을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하고 절대권력을 배후로 하여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는 진일보된 국민의식과 체제가 정착되고 있다.

우리의 축산물도 이제 소비자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서 그 위생도와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할 때가 왔고, 이제까지의 국민들이 보호해주는 축산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축산으로의 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양관리, 사료, 동물약품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유해한 물질이 유입되어 잔류할 수 있는 사료와 동물약물에 대한 관리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고 동물약품의 경우 올바른 용법·용량과 휴약기간만 철저히 준수한다면 동물약품으로 인한 위해 축산물 생산은 예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축산농가의 자위권 보장차원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양계에 사용되는 동물약품과 휴약기간

양계는 다른 축종보다도 다두 밀집사육에 따른 고온·다습한 사양환경으로 인하여 호흡기질병 등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동물약품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129개 제품이 허가되어 사료첨가,

음수투여, 분무, 주사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양계에 사용하는 동물약품은 배합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여 사용하거나 양계농가에서 사료나 음수에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을 정하여 4~5종의 약품을 제외하고 산란 개시 2주전부터 급여 하는 산란전·산란초·산란중기·산란말기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육계에서도 출하 7~10일전에 급여 출하사료에는 약품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양계농가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도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각 성분별 용법·용량과 휴약기간을 규정하여 준수케 함으로서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잔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인체에 사용하는 약제와의 교차내성 발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퀴놀론 제제의 경우 국내에서도 이들 약품에 대한 위해성과 잔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휴약기간을 재설정하고 사용금지 기간을 명확히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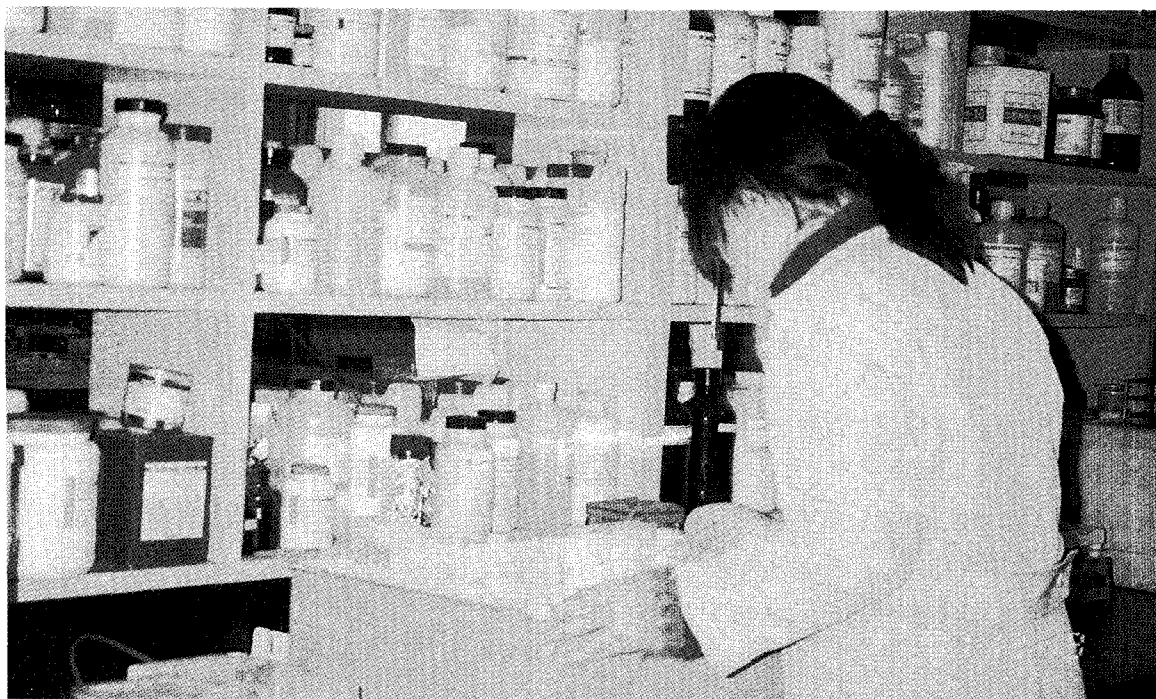
육계의 휴약기간은 물론, 계란에 잔류가 일어날 수 있는 산란계에서 휴약기간의 준수와 이 기간 동안에 무약제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안전한 양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1.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허가된 동물약품

소화용약	대사성약	항병원성약	백신	기타	계
144	518	922	305	240	2,129

표2. 양계분야에서의 퀴놀론 제제의 휴약기간 및 사용금지 기간

성분명	휴약기간 및 사용금지 기간		비고
	육계	산란계	
플루메킨	출하 7일전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산란계”는 “산란중인 닭”을 뜻함.
옥소린산	출하 7일전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노플록사신	출하 5일전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다노플록사신	출하 3일전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사라플록사신	식용목적 출하시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산플록사신	출하 10일전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시프로플록사신	출하 10일전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오프로사신	출하 7일전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엔노플록사신	출하 12일전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페플록사신	출하 5일전 사용금지	산란계 사용금지	



3. 유해물질이 잔류하게 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초래

양계산물은 우리 축산물중 가장 손쉽고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 국민들의 동물성 먹거리로서 복날 선호되는 삼계탕, 쉽고 간편한 요리방법 때문에 선호되는 계란 후라이, 운동회가 끝나고 목이 쉬어 아이들이 목을 달래기 위하여 먹는 날 계란 등 국민 모두가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중요 식품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한 식품을 생산하는 양계농가는 유해물질 잔류에 따른 규제나 처벌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내 양계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계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의식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축산물(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근거]에 의하여 국내 도축장에서 출하되었거나 출하하고자 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을 대상으로 출하전에는 “생체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후에는 “지육잔류검사”를 실시하여 항생제·설파제·합성항균제·농약·호르몬제 등의 잔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휴약기간준수, 비육후기사료 급여 철저,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계도하고 있으며 축산물 판매·유통업자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으로 판매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식품의기준및규격: 식품위생법 근거]에 의하여 유통하고 있는 식육, 어류 및 갑각류, 우유, 알(계란 포함)에서는 항생물질, 합성합균제, 구충제 및 합성호르몬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이행된 잔류물질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하여는 “불검출”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축산물 가공·처리단계나 판매단계에서의 법적 규제조치에 우선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보건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의 의식개혁과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표3. 동물약품의 휴약기간 미준수시의 결과

잔류요인	FDA 결과	버지니아주 결과
휴약기간을 모르고 불준수	38	41
휴약기간을 알면서 불준수	38	9
표시 사용법 불준수	36	22
수의사 지시 불준수	7	-
과잉용량 투여	2	-
미승인 효용을 위한 사용	8	2
관리 불량	16	11
사료혼합 불량	6	7
약품혼입 밀크 급여	2	-
투여 잘못	2	1
불량 사료	3	2
미정	106	30
불량 사료	264	125

4. 동물약품의 휴약기간 준수는 축산농가의 기본적 의무

축산물내에 유해물질은 사양관리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나 음수를 통하여 농약이나 유해물질이 섭취되는 경우, 유해물질에 오염된 사료를 먹었을 경우, 잔류성이 있는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으며, 미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축산농가에서 동물약품의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잔류되는 사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물약품의 잔류 및 인체약품과의 내성 발현 등으로 약품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들이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이러한 약품 사용금지 조치가 전세계적인 추세로 일반화 될 경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축산환경이 선진화되지 못한 나라의 경우 축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축산물내 유해물질의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내 유해물질 잔류 방지는 동물약품업체, 배합사료업체, 양축농가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어느 한부분이라도 축산물 위생도 향상에 소홀이 할 때 다른 부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 분야별로 잔류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1) 동물약품 업체

동물약품에 대한 효능·효과 등 표시사항을

양축농가가 알아보기 쉽도록 정확히 명시하고, 동물약품 사용시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주의사항 등을 필히 표시하여 준수케 하고, 양축농가가 동물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배합사료업체

동물약품이 첨가된 배합사료는 포장에 첨가약품의 내용과 휴약기간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약품 첨가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료 판매시 후기 배합사료(출하 전 가축용)의 급여방법 지도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양축농가

가축이 먹는 사료와 물 등이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나 주의 깊게 관찰한 후 급여하고, 동물약품을 사용할때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방법 및 용량 준수, 사용내역의 기록보존·유지하는 등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질병을 치료할 때 약품의 선택은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여야 함은 물론, 다 자란 가축은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출하하되 출하전 일정기간은 후기 배합사료를 급여한 후 출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하십시오.

- 3) 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지켜주십시오.
-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하십시오.
-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이십시오.
- 9)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하십시오.
- 10) 동물약품 사용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인근을 진료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관련자 모두의 의무이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할 때 소비자인 국민들은 우리 축산물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우리 축산물은 외면 당하게 될 것이다. 생산비 증가, 시장가격 하락, 수입 축산물의 수입 증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위생도가 실추되면 그나마도 생존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도 향상은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소중한 먹거리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시점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양계**